

『인천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6년 5월 10일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인천 시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만들고 인간으로서의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시장은 시민의 인권 보장과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규정함(안 제4조).
- 시장은 시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며,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규정함(안 제6조).

- 시장은 연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
- 시장은 시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인권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8조).
- 시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인권 보장 및 증진위원회를 설치하며, 위원회의 구성·운영을 규정함(안 제10조 ~ 안 제13조).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23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의회의장 (참조 : 인천광역시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 전화 032-440-6213, 팩스 032-440-876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인천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실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시민”이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시에 소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과 관련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이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시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5조(시민의 협력) 시민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시의 인권시책 시행시 협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권보장 및 증진의 기본방향
2. 분야별 추진과제 및 여성·아동·청소년·노인·외국인 등 인권취약계층의 전략
3. 사업추진을 위한 자원 조달 방안
4. 그 밖에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민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공청회를 열어 시민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시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인권교육)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시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장 및 민간 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권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인권교육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인권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지원
2. 인권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관계자 협의회 구성

3. 그 밖에 인권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항

- ③ 시장은 제1항의 인권교육 시행 및 제2항의 인권교육 체계 마련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할 수 있다.

제8조(인권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인권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인권 관련 실태조사
2. 인권침해사항에 대한 접수 및 상담
3. 인권 보장과 증진을 위한 시책 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홍보
4. 그 밖에 시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시장은 인권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인권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라 인권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력확충 또는 인권전담 부서를 신설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절차 및 방법 등은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의 설치 및 업무) ① 인권보장 및 증진을 심의

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6조 제4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에 따른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에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시장에게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인권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2. 인권관련 단체에서 인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인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임) 시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중에 사망하였거나 일신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의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시적으로 밝힌 경우
3. 비밀누설·인권에 어긋나는 활동 등 위원회의 품위에 손상을 입혔다고 위원회가 의결한 경우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개최되는 정기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되는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간사)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권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준용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